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강혜순 의원)

의안 번호	1422
----------	------

발의연월일 : 2017. 12.

발 의 자 : 강혜순, 서경환, 권태호
김경환, 이복희, 신성봉,
김영길, 천병태, 이효상,
김순점, 오세라 (11명)

1. 제정이유

문화예술 활동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문화예술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축제·행사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근거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3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
3. 제6조의 진흥사업의 실행계획
4. 필요한 자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2.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산업의 육성
3. 문화강좌 설치 및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5. 생활문화의 지원 및 시설의 확충
6.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우선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제·행사 등 활성화)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하여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하는 축제·행사 등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유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2.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3.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체험형 교육활동
 4.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5.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기관지 등 발간
 6.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7.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관리
 8.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계승·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1항의 문화예술 축제는 구에서 개최되는 축전·문화제·예술제 및 제(祭) 등에 해당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국내·외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국제적 행사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2항에 따른 해당 재산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

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

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용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